

위험성평가 방법·시기·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사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사업주	위험성평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의 수립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 단,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후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기록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회사소개 SU세이프어스



회사소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지주 SU Holdings Co., Ltd.

SU세이프어스

회사명	(주)SU지주
브랜드	세이프어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3층 (가산동, 대륭21차)
연락처	T. 02-567-7904 F. 02-567-7905 E. safety@safesus.co.kr
홈페이지	www.safesus.co.kr

안전·보건 주요산업

- 산업안전컨설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직무스트레스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안전검사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안전용품 MRO(구매대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전기안전시험 [절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IEC60204-1)
- KC인증 컨설팅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4호)

사업실적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업 : 현대택스(주), (주)동원F&B, 성일하이메탈(주), 츠카타니코리아(주) 외
 - 서비스업 : JW중외제약(주), 신일제약(주), (재)KTR, (주)아이씨알, (주)프레스솔루션 외
 - 건설업 : 한국텔레콤(주), (주)수정환경플랜트, 어반종합건설(주), (주)무궁화건설 외
 - 공공기관 : (재)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
- 산업안전컨설팅**
 - 전 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수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제조업·서비스업: (주)카카오, LG전자(주), 공항철도(주), 국군수도병원, 한국중부발전(주) 외
 - 토목/건설업: (주)효성, (주)대우건설, (주)한라, (주)코오롱글로벌, (주)한진중공업 외



위험성평가 | 안전한 일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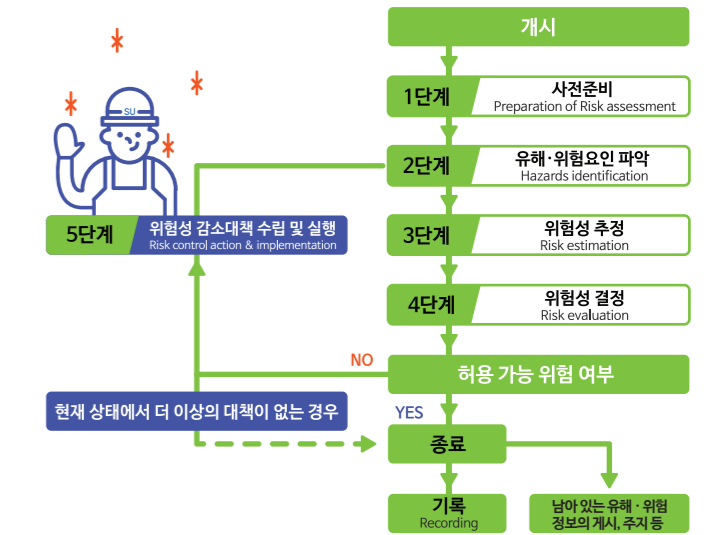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및 내용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사례설명

- 작업현장의 작업자가 필요한 기계설비나 도구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주요 원인은 사용 기계류의 결함이나 작업자의 오류 등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재해 발생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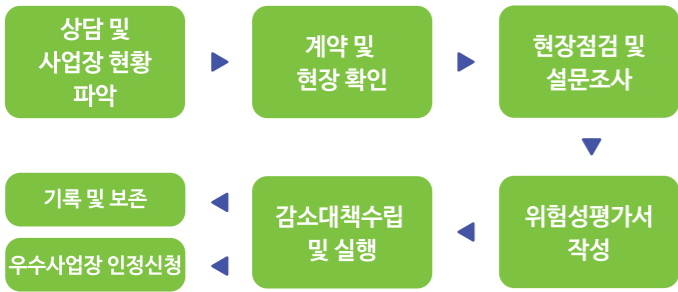
법적 근거

-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의무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벌칙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2조에 의한 업무 미실시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4조 업무 미실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성평가 컨설팅



☞ 컨설팅 흐름도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함

📅 세부계획

- 1.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상담을 통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업종 등)
- 2. 계약 및 현장 확인**
 - 사업장 방문 후 계약 체결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 보건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를 실시합니다.
- 3.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설문조사),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4. 위험성평가서 작성**
 -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Check List),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 등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5.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 6-1.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6-2. 우수사업장 인정**
 - 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 참고사항

• 위 6-2항목(우수사업장 인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



- 1.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세이프어스와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통하여 사업장현황 확인 후 미팅 일자를 잡는다.
- 2. 계약 및 현장 확인**
 사업장 방문 후 계약 체결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 보건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를 실시합니다.
- 3.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설문조사),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4. 위험성평가서 작성**
 KRAS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한다.
- 5. 기록 및 보존**
 작성된 위험성평가서를 바탕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6. 우수사업장 인정**
 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①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④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연도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등)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근로시간 단축 : 21.06.30.까지 10%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 사업주가 2개의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하금액



🔗 산재보험료 인하금액 예시표

이 자료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료 인하금액 예시표입니다.

이 표에서 제시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참고자료이며, 산재보험료 인하금액은 업종, 근로자 수, 재해율, 임금총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인하 : 매년 20%씩 3년간 인하

종업종명	산재보험요율 (천분율)	근로자 수	1년간 예상 산재보험료 (원)	3년간 예상 인하금액 (원)
식품제조업	19	10	5,928,000	3,556,800
담배제조업	8	10	2,496,000	1,497,6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	13	10	4,056,000	2,433,6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을]	20	10	6,240,000	3,744,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10	13,728,000	8,236,80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10	7,488,000	4,492,8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10	3,744,000	2,246,400
화학제품 제조업	17	10	5,304,000	3,182,40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10	2,808,000	1,684,8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10	3,744,000	2,246,400
고무제품 제조업	21	10	6,552,000	3,931,20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10	9,048,000	5,428,800
유리 제조업	15	10	4,680,000	2,808,000
시멘트 제조업	29	10	9,048,000	5,428,80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10	11,544,000	6,926,400
금속제련업	11	10	3,432,000	2,059,200
금속제품 제조업	33	10	10,296,000	6,177,600
도금업	18	10	5,616,000	3,369,600
기계·기구 제조업	19	10	5,928,000	3,556,80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10	3,432,000	2,059,200
전자제품 제조업	7	10	2,184,000	1,310,40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10	7,800,000	4,680,00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10	4,992,000	2,995,20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10	5,304,000	3,182,40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10	2,808,000	1,684,800
수제품 제조업	16	10	4,992,000	2,995,200
기타제조업	28	10	8,736,000	5,241,600